

선거시행세칙

개정 2021. 09. 28.~29.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2022. 09. 29.~30.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2026. 09. 21.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1장 총칙
제2장 선거 운동
제3장 투표
제4장 개표

제5장 선거무효, 재선거
제6장 재투표
제7장 선거 연장 및 연기
제8장 선거법위반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선거시행세칙은 서울교육대학교 학생회 회칙에 의거하여 총학생회의 정, 부학생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치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선거방법)

보통, 비밀, 평등, 직접선거로 한다.

제3조 (선거시기)

선거는 매년 10월 말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 일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장 (선거 운동)

제4조 (홍보)

- ① 강의실 방문 시 수업시간을 이용한 유세는 불가능하다. 거리유세 시에는 유인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현수막은 최대 3개까지 제작 가능하다. 애플과 확성기는 12:50부터 13:30까지, 17:20부터 19:00까지 도서관 및 기숙사 앞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하다.
 1. 투표 독려 차원의 현수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제작해 게시한다.
- ② 홍보 장소는 교내로 제한한다.
- ③ 홍보는 08:00부터 19:00까지 가능하다. (홍보 마감일에는 18:00까지 유세 가능)
- ④ 홍보는 후보자 선거 유세 기간 동안만 가능하다.
- ⑤ 부적절한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을 금지한다.
- ⑥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인신공격을 하지 않아야 한다.
- ⑦ 공개 장소의 연설 또한 위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선전)

- ① 선거벽보의 크기는 자유로 하며(단, 최대 A1까지 허용) 벽보 부착 기간은 후보자 선거 유세 기간 및 투표기간 동안이다.
- ② 모든 선거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승인을 받은 후 부착 가능하다.
- ③ 각 후보는 한 게시판 당 최대 1개씩 선거 벽보를 부착할 수 있다.
- ④ 선거 벽보는 이하에 명시된 게시판에만 부착 가능하다
 1. 학생회관 내부 게시판
 2. 도서관 옆 게시판
 3. 다솜채 앞 자유게시판
 4. 에듀웰 앞 자유게시판
 5. 학생회관 옆문 게시판

- ⑤ 선거 벽보는 선거기간이 종료된 후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선관위가 임의 철거한다.
- ⑥ 선거 유인물의 크기는 자유로 하되 최대 B5로 제한한다.

제6조 (추천인 서명)

- ① 추천인 서명은 본 회원의 이름, 학번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으로도 수합 가능하다. (단, 온라인으로 수합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링크를 사용해야 한다.)
- ② 추천인 서명은 선거 시행 해당 학기 기준 재학생만 가능하다.

제7조 (온라인 홍보)

- ① 온라인 홍보는 SNS(인스타그램)와 카카오톡에서 진행 가능하다.
- ② 온라인 선전 계획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 ③ 인스타그램 홍보는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가능하다.
 - 1. 선거운동본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 수 있다.
 - 2. 기존 총학생회 계정에도 업로드 가능하나, 업로드 주기 및 횟수는 선전 계획 제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결정한다.
 - 3. 카카오톡 홍보의 경우, 선거운동본부의 선전 계획을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 후 홍보 주기, 횟수를 결정한다.
 - 4. 홍보글의 공지 및 게시기간은 선거운동기간 및 투표기간으로 한다.

제3장 (투표)

제8조 (투표소의 설치)

- ① 선관위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투표소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학생회관, 연구강의동, 에듀웰센터 중 2개의 건물의 각 1층에 2개소씩 설치한다.
- ③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 및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 ④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투표소의 설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
- ⑥ 건물 폐쇄 등으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투표 시간)

- ① 투표시간은 선거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 ②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투표권을 인정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제10조 (기표 방법)

- ①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 ①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② 선관위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 ③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합·보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투표관리관)

- ① 투표관리관은 선관위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 ② 투표관리관은 투표함의 관리·봉인·봉쇄·송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3조 (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 ①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 ② 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 및 번호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제14조 (투표함 등의 송부)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투표관계서류의 인계)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 (온라인 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하에 오프라인 투표가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개표)

제17조 (개표 관리)

- ① 개표사무는 선관위가 행한다.
- ② 개표소는 서울교대 총학생회실(학생회관 3층)에 설치한다.
- ③ 건물 폐쇄 등으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개표소)

- ① 선관위는 선거일전 2일까지 교내에 설치할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개표사무원)

- ① 선관위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둔다.
- ② 개표사무원은 선관위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20조 (투표함의 개함)

- ①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 ② 각 선거운동본부에서는 후보를 제외한 개표참관인을 최대 2인 둘 수 있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제21조 (무효투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둘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 란에만 2회 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21조 (개표시의 이의제기)

- ① 개표 시에 각 후보자는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중선거관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된 투표용지는 같은 함의 모든 투표용지의 개표가 끝난 후 중선거관위원의 2/3 출석과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제22조 (오차율 계산)

- ① 전체 오차율(전체 선거인명부상의 투표인 수와 실제 투표용지 간의 오차로 계산)이 전체의 $\pm 1\%$ 이상 발생하면 선거를 무효로 처리한다. 단 오차율이 $\pm 1\%$ 이상일 시에 다 득표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3조 (투표용지의 구분)

- ① 개표가 끝난 뒤에는 투표소 별로 투표용지를 유효와 무효로 구분하고, 각각 지정된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1개월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무효, 재선거)

제24조 (당선의 이의제기)

- ① 누구든지 당선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위원장의 당선공고가 있은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선거위에 제기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된 내용에 대해서 선거위 재적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이의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 ③ 위의 이의제기가 인정될 때에는 임시전학대회를 열어 재적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다.

제25조 (재선거)

- ① 오차율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때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단선일 경우 3분의 1이상의 투표율과 투표자 중 2/3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당선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사망 혹은 피선거권이 상실될 때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재투표)

제26조 (재투표)

- ① 다음에 해당할 경우 선거위는 즉시 회의를 열어 재투표여부를 결정하며, 재투표의 결정은 재적인원 2/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투표함의 분실
 2. 선거인명부의 분실
 3. 개표 전 투표함 개봉
 4.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만큼 중대한 관리상 잘못이 드러날 경우
- ② 재투표가 결정될 경우 중선거관은 즉시 공표해야하며, 본 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 ③ 각 선거운동본부는 본 투표 종료이후에 재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추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7장 (선거 연장 및 연기)

제27조 (선거 연장 및 연기)

- ①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시행할 수 없을 때, 선거를 2~3일 연기할 수 있다.
- ②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할 때는 익일 18:00까지로 투표일을 하루 연장한다. 하루 연장하여도 3분의 1을 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재선거의 시기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 ③ 경선의 경우 두 후보 이상이 최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 익일 18:00까지 투표일을 하루 연장한다.

제 8 장 (선거법위반)

제28조 (선거법 위반)

- ① 상기 조항을 위반할 경우 선관위의 경고를 받으며, 선관위가 학생들에게 위반사항을 공지한다.
(조항의 위반 여부는 선관위 재적인원의 2/3찬성으로 결정한다.)
- ② 세 번의 경고를 받을 경우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